



제422회국회(임시회)
제 1 차 정 무 위 원 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

■ 이헌승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6963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4
1. 펀드 판매보수 직접수취·성과연동 허용	4
2.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7
3. 전자수익자총회 도입	10
4. 펀드관계회사 규율 신설	17
5.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편	29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현승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2. 26.
3. 회 부 일 : 2024. 12. 27.

II. 제안이유

공모펀드는 국민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손쉽게 소액·분산투자할 수 있는 간접투자수단이나, 최근 ETF, 사모펀드에 비해 성장이 정체된 상황임. 이러한 배경에는 투자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 효용 대비 높은 판매보수·판매수수료 등 비용, 투자자의 낮은 신뢰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모펀드 시장 전반의 혁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또한 높아지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2024년 1월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발표하여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제로 판매보수체계 개편, 펀드관계회사의 신뢰성 제고, 수익자총회 운영 전자화,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편 등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음.

이에 은행·증권사 등 펀드 판매회사와 투자자의 유인구조가 일치하도록 판매보수체계를 개편하고 펀드관계회사의 규율을 마련하는 등

관련 기관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기적으로 투자자에게 환매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펀드 및 전자수익자총회를 각각 도입하고 외국펀드 등록제도를 합리화하는 등 상품·인프라를 개선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펀드 판매보수 직접수취·성과연동 허용(안 제76조제4항)

현재 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수취하고 있는 펀드 판매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직접 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보수를 펀드 운용실적에 연동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투자자가 비용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펀드 판매회사와 투자자의 유인구조가 일치하도록 함.

나.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안 제82조, 제186조제1항, 제230조제6항).

만기시까지 환매가 금지된 환매금지형 펀드에 대해 주기적으로 투자자로부터 집합투자증권의 일부를 매수할 수 있게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환매 기회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펀드(기간환급형 펀드)를 도입함.

다.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한 전자수익자총회 도입(안 제189조제7항, 제190조의2 신설 등)

펀드 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을 위한 펀드 수익자총회를 수익자 전부가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완전전자수익자총회 방식 또는 수익자가 소집지에 출석하거나 전자통신수단으로 출석하는 방식 중 선

택하여 출석할 수 있는 병행전자수익자총회 방식으로 전자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라. 펀드관계회사 규율 신설(안 제254조제2항, 제254조의2부터 제254조의4까지 신설, 제255조, 제258조제2항,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5까지 신설, 제260조, 제263조제2항, 제263조의2부터 제263조의6까지 신설, 제265조 등)

펀드의 후선업무를 수행하는 펀드관계회사인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에 대해 내부통제기준 제정, 준법감시인 선임,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을 규율함.

마.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편(안 제27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파생결합증권 등을 통해 외국펀드를 간접적으로 국내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 외국펀드를 국내에 등록하도록 하여 규제 우회소지를 차단하고,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펀드에 대해서는 등록요건을 합리화함.

IV. 검토의견

1. 펀드 판매보수 직접수취 · 성과연동 허용

☐ 개정안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이하 “판매사”)가 펀드의 판매보수를 투자자로부터 직접 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보수를 펀드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해진 산정방식에 따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4항).

현행	개정안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략)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u>집합투자기구로부터</u>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連動)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④ ----- ----- ----- ----- ----- ----- ----- ----- -----투하자 또는 집합투자 <u>기구로부터</u> ----- ----- ----- ----- ----- -----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 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⑤ · ⑥ (생략)	에는 <u>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여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른 판매보수를 받을 수 있다.</u> ⑤ · ⑥ (현행과 같음)

□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은 판매사가 판매보수¹⁾를 펀드재산으로부터 받도록 하고, 펀드의 운용실적에 연동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제76조²⁾), 이는 펀드의 운용실적이 판매서비스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임.³⁾

□ 그런데, 이와 같은 판매보수 체계는 ① 투자자 입장에서 판매보수를 판매사에게 직접 지불하지 않아 비용을 명시적으로 인식하기 어렵고, 판매보수의 적정성을 파악하기 곤란하며, ② 판매사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차별화를 제약하고, 투자자에 대한 책임판매보다 판매보수가 높은 펀드를 투자자에게 추천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

○ 실제로, 개인 판매잔고 상위 10개 판매사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공시한 주식형 추천펀드 목록을 살펴보면, 이들 중 전형적인 C클래스 펀드⁴⁾가 9개⁵⁾였는데, 이들 펀드의 평균 판매보수는

1) 펀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펀드로부터 받는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④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와 관련하여 판매수수료(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판매보수(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금전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받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連動)하여 판매수수료 또는 판매보수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3) 이상복, 『자본시장법』, 2021., p.249.

4) 선취, 후취 판매수수료가 없는 대신 연간보수가 높은 펀드

98.1bp로 법정상한⁶⁾인 100bp에 근접하였음.⁷⁾

□ 이에 개정안은 판매사가 투자자 계좌로부터 판매보수를 직접수취할 수 있도록 하고, 판매보수를 펀드의 운용실적에 연동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것으로, 투자자가 판매비용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고, 투자자와 판매회사 간의 이해를 일치시켜 투자자 중심의 펀드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이와 같은 개정안 입법취지의 달성 여부는 구체적인 운용실적 연동방식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금융위원회는 운용실적에 연동한 판매보수 도입이 판매사로 하여금 투자자 중심의 펀드 판매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규모가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5) ‘채감식’과 같이 보유 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변화하는 펀드, 운용보수와 판매보수를 크게 낮춰 공익 마케팅을 실시한 특수사례에 해당하는 펀드는 제외함.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76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⑤ 제4항의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천분의 15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④ 법 제76조제5항에 따라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취득하는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법 제76조제4항에 따른 판매보수를 말한다. 이하 “판매보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판매보수: 집합투자재산의 연평균가액의 100분의 1. 다만, 투자자의 투자기간에 따라 판매보수율이 감소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는 시점에 적용되는 판매보수율이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그 시점까지는 100분의 1에서부터 1천분의 15까지의 범위에 서 정할 수 있다.

7) 권민경, “공모펀드 판매다가에 대한 고찰과 시사점”, 『자본시장연구원 이슈보고서 23-19』, 2023.

2. 기간환급형 펀드 도입

- 개정안은 집합투자업자등으로 하여금 환매금지형 펀드의 투자자에게
집합투자증권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 제186조제1항, 제230조제6항).

현행	개정안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재산으 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 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 기구의 재산으로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다.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 ----- ----- ----- -----, ----- ----- ----- -----.
1. 2. (생략) <u><신설></u>	1. 2. (현행과 같음) 3. <u>제230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증 권을 매수하는 경우</u>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투자회사등은 자기의 재산으 로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계 산으로 자기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을 취득할 수 있다.	제186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취득 제한 등) ① ----- ----- ----- -----, ----- ----- -----.
1. ~ 3. (생략) <u><신설></u>	1. ~ 3. (현행과 같음) 4. <u>제230조제6항에 따라 집합투자증</u>

현행	개정안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 ⑤ (생략) <신설>	<u>권을 매수하는 경우</u>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집합투자업자등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시기,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집합투자증권 매도의 청약을 권유하고 그 집합투자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u>

□ 현행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언제든지 펀드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으나(제235조제1항⁸⁾), 존속기간을 정한 펀드에 대하여 환매금지형 펀드를 설정·설립할 수 있음(제230조제1항⁹⁾).

○ 펀드가 유동성 부족으로 현금화가 곤란하거나 평가가 곤란한 자산을 편입하는 경우 환매를 허용하면 투자자 간에 불평등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자본시장법」은 환매금지형 펀드의 설정·설립을 허용하고 있음.¹⁰⁾

○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금 회수가 어려우므로 별도의 환금성 보장 등이 없는 경우 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펀드를 증권시장에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5조(환매청구 및 방법 등) ① 투자자는 언제든지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① 투자신탁·투자유한회사·투자합자회사·투자유한책임회사·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을 설정·설립하고자 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의 발기인(이하 이 절에서 “집합투자업자등”이라 한다)은 제235조제1항에 불구하고 존속기간을 정한 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만 집합투자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는 집합투자기구(이하 이 조에서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라 한다)를 설정·설립할 수 있다.

10) 임재연, 『자본시장법』, 2022., p.1187

상장(제230조제3항¹¹⁾)하도록 하여 투자자가 상장된 펀드지분을 증권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도록 하는 구조임.¹²⁾

□ 그런데, 이와 같은 환매금지형 펀드는 만기 도래시까지 투자자의 자금 회수가 곤란하며, 환금성 제공을 위해 상장의무가 부과되어 있으나 실제 증권시장에서의 거래량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환매금지형 펀드가 주기적으로 자기 펀드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허용하여 투자자에게 환매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임.

○ 참고로, 미국에서는 1993년 환매금지형 펀드 투자자에게 유동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존속기간 중 특정시기에 환매하는 인터벌 펀드(interval fund)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24년 기준 인터벌 펀드의 수는 총 94개, 운용규모는 890억 달러에 달함.¹³⁾

□ 개정안은 환매금지형 펀드에 대해서도 주기적으로 환금이 가능하도록 하는 새로운 유형의 펀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환금성 제약으로 부동산·인프라 등의 자산을 편입한 펀드에 투자하기 어려웠던 투자자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환매금지형 펀드의 경우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가

1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30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③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신탁계약 또는 정관에 투자자의 환금성 보장 등을 위한 별도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집합투자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하여야 한다.

12) 이상복, 『자본시장법』, 2021., p.297

13)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많으므로 투자자에 대한 환급규모가 현금성 자산 보유규모보다 크지 않도록 대통령령에서 환급시기, 환급규모를 면밀하게 설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 전자수익자총회 도입

□ 개정안은 전자등록기관에 작성·비치해야 하는 사항에 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하고,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수익자총회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제7항, 제19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① ~ ⑥ (생략)	제189조(투자신탁의 수익권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전자등록기관은 제6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수익자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⑦ ----- ----- ----- -----.
1. 수익자의 주소 및 <u>성명</u>	1. ----- <u>성명, 주소 및 전자우편 주소</u>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⑧·⑨ (생략)	⑧·⑨ (현행과 같음)
<u><신설></u>	<u>제190조의2(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수익자총회) 「상법」 제364조제2항 및 제364조의2는 전자통신수단에 의한 수익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회사”는 “집합투자업자”로, “정관”은 “신탁계약”으로, “주주”는</u>

현행	개정안
제201조(주주총회) ①·② (생략)	“수익자”로, “병행전자주주총회”는 “병행수익자총회”로, “완전전자주주총회”는 “완전전자수익자총회”로 본다.
③ 제190조제1항·제3항 및 제6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은 “투자회사”로, “신탁계약”은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회사의 이사회”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주식”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주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주주총회”로, “좌수”는 각각 “수”로,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2항”으로 본다.	제201조(주주총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제9항까지, 제190조의2----- ----- -----은 각각 “정관”으로----- ----- ----- ----- ----- ----- -----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주주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주주총회”로, “좌수”-----제190조제8항-----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0조(사원총회) ①·② (생략)	제210조(사원총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90조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③ ----- -----제10항까지, 제190조의2----- ----- -----, -----“투자신탁”은

현행	개정안
각각 “수”로 보고, <u>같은 조 제8항</u>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 ----- -----“<u>병행수익자총회</u>”는 “<u>병행사원총회</u>”로, “<u>완전전자수익자총회</u>”는 “<u>완전전자사원총회</u>”로, “<u>수익자명부</u>”----- ----- -----제190조 제8항----- -----.
제217조의5(사원총회) ① ~ ③ (생략) ④ 제19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부터 <u>제10항까지</u>의 규정은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u>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u>” 및 “<u>집합투자업자</u>”는 각각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업무집행자”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사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사원총회”로, “<u>수익자명부</u>”는 “사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u>같은 조 제8항</u>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제217조의5(사원총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0항까지, 제190조의2----- ----- -----. -----“투자신탁”은 “투자유한책임회사”로, “신탁계약”은 각각 “정관”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 ----- ----- ----- ----- ----- ----- ----- ----- ----- ----- -----“<u>병행수익자총회</u>”는 “<u>병행사원총회</u>”로, “<u>완전전자수익자총회</u>”는 “<u>완전전자사원총회</u>”로, “<u>수익자명부</u>”----- ----- -----제190조 제8항----- -----.

현행	개정안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220조(조합원총회) ① ~ ③ (생략)	제220조(조합원총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9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합자조합의 조합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각각 “투자합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 “투자신탁재산”은 “투자합자조합재산”으로, “수익증권”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총좌수”는 각각 “총수”로, “수익자”는 각각 “조합원”으로, “수익자총회”는 각각 “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는 “조합원명부”로, “좌수”는 각각 “수”로 보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5항”은 “제3항”으로 본다.	④ ----- -제10항까지, 제190조의2----- ----- -----“투자신탁”은 “투자합자조합”으로, “신탁계약”은 각각 “조합계약”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 ----- ----- ----- ----- ----- ----- ----“병행수익자총회”는 “병행조합원총회”로, “완전전자수익자총회”는 “완전전자조합원총회”로, “수익자명부”----- -----제190조제8항-----.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① ~ ③ (생략)	제226조(익명조합원총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90조제3항·제4항 및 제6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은 투자익명조합의 익명조합원총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집합투자업자”는	④ ----- -제10항까지, 제190조의2----- ----- -----“투자신탁”은 “투자익명조합”으로, “신탁계약”은

□ 그러나, 202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공모펀드 수익자총회의 67%가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부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¹⁵⁾

○ 현재 수익자총회 소집통지는 우편통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접근성과 적시성이 높은 이메일 소집통지는 하지 않고 있으며, 온라인 방식의 전자수익자총회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오프라인 방식으로 수익자총회가 개최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이메일 등의 소집통지가 가능하도록 전자등록기관에 작성·비치해야 하는 사항에 전자우편 주소를 포함하고, 수익자총회의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려는 것임.

○ 한편, 현행법 제9조¹⁶⁾는 펀드의 형태를 투자신탁,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투자유한책임회사, 투자합자조합, 투자익명조합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펀드의 형태에 따른 각각의 총회에 대한 전자적 방식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15) 금융위원회 제출자료

1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⑱ 이 법에서 “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신탁”이라 한다)
2.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
3.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회사”라 한다)
4.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회사”라 한다)
- 4의2.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유한책임회사”라 한다)
5.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합자조합”이라 한다)
6.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이하 “투자익명조합”이라 한다)

[표1] 펀드의 구조적 형태

구분		내용	총회
신탁형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인 위탁자가 신탁업자에게 신탁한 재산을 신탁업자로 하여금 그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운용하게 하는 신탁 형태의 펀드	수익자총회
회사형	투자회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형태의 펀드	주주총회
	투자유한회사	「상법」에 따른 유한회사 형태의 펀드	사원총회
	투자합자회사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 형태의 펀드	사원총회
	투자유한책임회사	「상법」에 따른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펀드	사원총회
조합형	투자합자조합	「상법」에 따른 합자조합 형태의 펀드	조합원총회
	투자익명조합	「상법」에 따른 익명조합 형태의 펀드	익명조합원총회

□ 다만, 개정안은 주주총회의 전자적 소집통지, 전자주주총회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상법」의 개정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향후 「상법」 개정안¹⁷⁾의 심사경과를 고려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펀드관계회사 규율 신설

□ 개정안은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 준법감시인 선임, 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을 규율하려는 것임(안 제254조제2항, 제254조의2부터 제254조의4까지 신설, 제255조, 제258조제2항, 제258조의2부터 제258조의5까지 신설, 제260조, 제263조제2항, 제263조의2부터 제263조의6까지 신설, 제265조 등).

17) 상법 일부개정법률안(2024. 6. 27. 정부제출, 의안번호 2201063호)

현행	개정안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① (생략)	제254조(일반사무관리회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 ----- -----.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6. ----- -----것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신설>	제254조의2(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항의 공시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는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신설>	제254조의3(내부통제기준)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일반사무관리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반사무관리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설>	제254조의4(준법감시인) ① 일반사무관리회사(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

현행	개정안
제255조(준용규정) 제42조,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준용한다.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일반사무관리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일반사무관리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일반사무관리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2. 해당 일반사무관리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254조제1항의 업무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5조(준용규정)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42조, 제54조, 제60조, 제63조(기준가격산정을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64조 및 제418조-----.

현행	개정안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① (생략)	제258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②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8. ----- -----것
③ ~ ⑨ (생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신설>	제258조의2(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항의 공시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신설>	제258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집합투자기구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집합투자기구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현행	개정안
<u><신설></u>	<u>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할 수 있다.</u> <u>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기준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58조의4(준법감시인) ①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집합투자기구평가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집합투자기구평가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u> <u>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u> <u>1. 해당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u> <u>2. 해당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258조제1항의 업무</u> <u>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집합투자기</u>

현행	개정안
<신 설>	구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8조의5(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평가대상인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집합투자업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를 요청한 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는 행위 2. 집합투자기구평가 과정에서 다른 집합투자평가회사와 면담, 협의 또는 자료의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집합투자기구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 3. 집합투자기구평가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평가대상인 집합투자기구를 설정·설립한 집합투자업자,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또는 집합투자기구평가를 요청한 자에게 고객을 소개·알선하는 등 일체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 4. 집합투자기구평가와 관련하여 집

현행	개정안
제259조(영업행위준칙 등) ① 집합투자 기구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항이 포함된 영업행위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u>합투자기구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 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 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u>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 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삭 제>
②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의 명세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제공 할 수 있다.	
③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평가기 준의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0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제260조(준용규정)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54 조, 제60조, 제63조(집합투자기구의 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하 다), 제64조 및 제418조----- -----.
제263조(채권평가회사) ① (생략)	제263조(채권평가회사)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 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 어야 한다.	② ----- ----- -----.
1. 2. (생략)	1. 2. (현행과 같음)
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출자액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현행	개정안
<u>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u>의 출자액이 각각 100분의 10 이하일 것 <신 설> <신 설> <신 설> 4. ~ 7. (생략)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 ⑨ (생략) <신 설> <신 설>	-----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다.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 7. (현행과 같음) 8. ----- -----것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63조의2(임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2항·제3항의 공시 관련 부분은 제외한다)는 채권평가회사 및 그 임원에게 준용한다. 제263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① 채권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채권평가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이해상충방지체계에 관한 사항 2.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채권평가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채권평가회사의 증권평가기준 공

현행	개정안
<신설>	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3조의4(준법감시인) ① 채권평가회사(자산규모,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채권평가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채권평가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조사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준법감시인을 1명 이상 두어야 하며, 준법감시인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결과를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에게 보고할 수 있다. ② 준법감시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채권평가회사의 고유재산의 운용업무 2. 해당 채권평가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제263조제1항의 업무 ③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30조는 채권평가회사의 준법감시인에게 준용한다. ④ 그 밖에 준법감시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3조의5(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채권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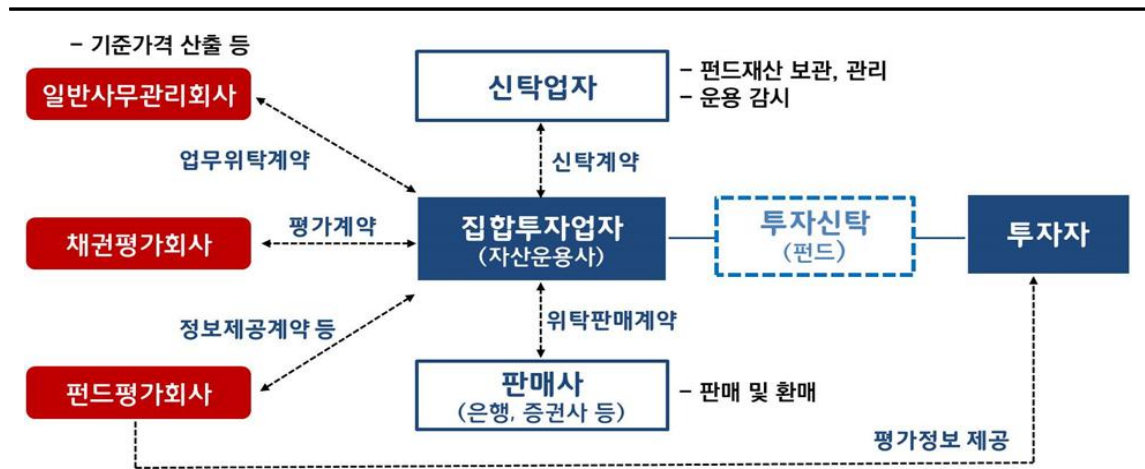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신설>	<u>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1. <u>채권평가를 요청한 자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의 부당한 요구에 따라 해당 채권을 평가하는 행위</u> 2. <u>채권평가 과정에서 다른 채권평가 회사와 면담, 협의 또는 자료의 제공 등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교환하는 행위</u> 3. <u>채권평가계약 체결을 조건으로 채권평가를 요청한 자 또는 그의 이해관계자에게 고객을 소개·알선하는 등 일체의 대가를 제공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u> 4. <u>채권평가와 관련하여 채권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u> 5. <u>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u> <u>제263조의6(의결권의 제한) ① 제263조 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채권평가회사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유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의결권 행사의 범위는 같은 호에 따른 한도로 제한한다.</u>

현행	개정안
제264조(업무준칙 등) ① 채권평가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업무준칙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채권평가회사의 증권평가기준 공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5조(준용규정) 제54조, 제60조 및 제64조는 채권평가회사에 준용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263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같은 호에 따른 출자한도를 초과하여 채권평가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도를 초과하여 보유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삭 제> 제265조(준용규정)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54조, 제60조, 제63조(채권의 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64조 및 제418조----- -----.

□ 펀드관계회사란 자산운용업의 후선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회사로, 「자본시장법」상 ① 일반사무관리회사(펀드 기준가격 산정), ② 펀드평가회사(펀드 평가 및 투자자 정보 제공) 및 ③ 채권평가회사(펀드 편입자산의 가격 평가·제공)를 총칭함.

○ 2024년 11월 기준 일반사무관리회사 11사, 채권평가회사 5사, 펀드평가회사 7사가 운영 중에 있음.

[표2] 펀드관계회사 구조도



(자료: 금융위원회, “기관·상품·인프라 혁신을 통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2024.)

□ 펀드관계회사는 금융투자업자나 신용평가회사와 달리, 「자본시장법」상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제54조18), 자료의 기록·유지(제60조19), 손해배상책임(제64조20) 등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 중임.

□ 개정안은 펀드관계회사에 대해 ① 내부통제기준 제정(안 제254조의3,

1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4조(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은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이용하거나 제삼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0조(자료의 기록·유지) ①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 영위와 관련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유지하여야 하는 자료가 멸실되거나 위조 또는 변조가 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4조(손해배상책임) ① 금융투자업자는 법령·약관·집합투자계약·투자설명서(제123조제1항에 따른 투자설명서를 말한다)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투자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금융투자업자가 제37조제2항, 제44조, 제45조, 제71조 또는 제85조를 위반한 경우(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과 집합투자업을 함께 영위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해상충과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로서 그 금융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② 금융투자업자가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로서 관련되는 임원에게도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융투자업자와 관련되는 임원이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58조의3, 안 제263조의3), 준법감시인 선임(안 제254조의4, 제258조의4, 제263조의4) 및 업무보고서 제출(안 제255조, 제260조, 제265조) 등을 의무화하고, ② 펀드평가회사와 채권평가회사에 대해서는 평가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불건전영업행위²¹⁾ 차단을 위해 영업 관련 금지행위를 신설(안제258조의5)하며, ③ 금융기관·상호출자제한집단이 사실상 채권평가회사에 10%를 초과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도 출자 제한을 적용(안 제263조)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0% 초과취득분의 의결권 행사 제한 및 처분명령을 신설(제263조의6)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펀드산업의 발전에 따라 펀드관계회사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5. 외국펀드 등록제도 개편

- 개정안은 외국펀드를 간접적으로 국내에 판매하는 경우에도 그 외국펀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전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외국펀드에 대해서는 등록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27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21) 평가의뢰인의 부당한 요구에 따른 평가, 평가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는 정보 교환행위, 평가계약 체결 조건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 평가 관련 상품·서비스 구매 강요 등

현행	개정안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외국 투자신탁(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① ----- ----- ----- ----- ----- ----- ----- ----- ----- ----- -----판매(간접적 판매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8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이법”은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③ ----- ----- -----등록(제2항제1호의 경우 제18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 -----.

현행	개정안
설립된 국가의 법”으로 본다.	----- ----- -----.
<신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현행 「자본시장법」 제270조제1항²²⁾은 외국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파생결합증권 등을 통하여 외국펀드를 간접적으로 판매하는 경우 등록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고 있어, 등록 규제를 우회할 소지가 있음.²³⁾

□ 이에 개정안은 파생결합증권 등을 통해 외국펀드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²⁴⁾에도 해당 외국펀드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등록 규제를 우회하여 외국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라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한편, 현행 「자본시장법」 제279조제3항²⁵⁾은 외국펀드 등록요건²⁶⁾에

2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① 외국 투자신탁(투자신탁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투자신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나 외국 투자익명조합(투자익명조합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익명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외국 집합투자업자(외국 법령에 따라 집합투자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외국 투자회사등(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투자회사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 집합투자증권(집합투자증권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외국에서 발행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국내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 집합투자기구(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설립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3) 금융위원회는 국내 증권사가 외국펀드를 취득 후 이를 기초로 하는 금융투자상품(DLS, TRS 등)을 판매하는 경우를 예로 들고 있음.

24) 금융위원회는 ① DLS·TRS의 기초자산이 되는 외국펀드, ② 신탁의 투자대상 자산이 되는 외국펀드, ③ 사모펀드가 특정 외국펀드에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하는 경우 해당 외국펀드 등을 예로 들고 있음.

대하여 국내펀드 등록요건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투자자에게만 판매될 경우 해외사례²⁷⁾에 비해 엄격하다는 평가가 있음.²⁸⁾

□ 이에 개정안은 외국펀드를 전문투자자에게만 판매하는 경우 일부 요건²⁹⁾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외국펀드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려는 취지임.

○ 참고로, 금융위원회는 일부 요건을 삭제하는 대신, 하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이익·비용·위험 관련 사항을 국문으로 명확히 기재할 것을 새로운 요건으로 신설할 예정임.

[표3] 전문투자자 대상 외국펀드 등록요건 개편안

현행	개편
① 운용사 등이 업무정지 중이 아닐것	현행 유지
② 펀드가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③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않을 것	이익·비용·위험 관련 사항을 국문으로 명확히 기재
④ 펀드 형태별 자본시장법상 요건	폐 지

(자료: 금융위원회)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 등) ③ 제182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이 법”은 “외국 집합투자기구가 설정·설립된 국가의 법”으로 본다.

2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2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 ② 제1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자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각 목 생략)
2. 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3. 집합투자계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밖에 제9조제18항 각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27) 미국·홍콩 등은 전문투자자 대상 외국펀드의 경우 사전심사를 생략(사후보고 등) (자료: 금융위원회)

28) 금융위원회, “기관·상품·인프라 혁신을 통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 2024.

29) ① 집합투자계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않을 것, ② 펀드 형태별 「자본시장법」상 요건을 갖춘 것

문 의 처
02)6788-5111